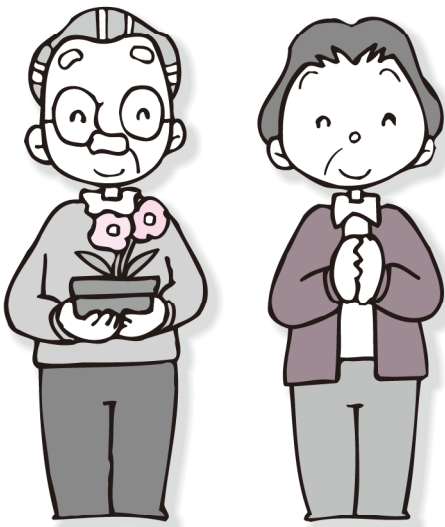


개호보험의 피보험자란?

개호보험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을 제1호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.
40세에서 64세까지를 제2호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.

65세 이상 (제1호 피보험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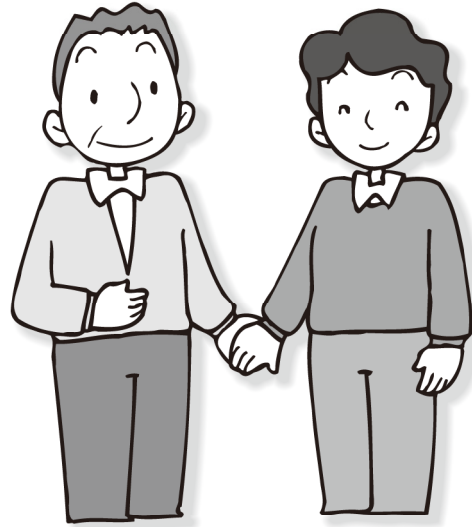
● 보험료는

소득 등에 따라 11등급의 보험료를 설정합니다.

●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

- 목욕, 배변,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분(요개호자)
- 심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, 일상생활의 일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분(요지원자)

40세에서 64세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(제2호 피보험자)



● 보험료는

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.

●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

- 노화로 인한 질병(16가지질병)으로 개호 등이 필요한 분
(요개호자·요지원자)